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를 실시한 후,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업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7965	업소명	참숯불바베큐
영업자	문기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9길 19,(성수1가)		
위반내용	영업정지 중 영업				
의견제출	미 제출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기준일: 2015.1.2.)				

-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주무관 **최병희** 식품위생팀장 **정창훈** 보건위생과장 **정주섭** 보건소장 12/23
김경희

협조자 ★공중위생팀장 **代김영식**